초기 교화단 상시 일기의 의의

—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규약』「세칙」을 중심으로 —

류 정 도 (원불교 정책연구소)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초기 교단 상시 일기의 변천
Ⅲ. 신분 검사와 학위 등급
Ⅳ. 나가며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소태산 대종사는 원기 원년(1916)에 대각(大覺)을 이루시고 바로 교화에 임하시어 영산(靈山)에서 회상의 토대를 세운 후, 변산(邊山)에서 교법의 대강(大綱)을 제정하시었다. 그리고, 대종사께서는 다시 본격적인 교화를 위하여 후천(後天) 개벽(開闢)의 원년(元年)인 원기 9년(1924)에 교통이 편리한 전북 익산에서 '불법연구회(佛法硏究會)'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총부를 설립하여 익산 회상을 여시게 되었다. 그리고 교단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원기 12년(1927)에 『불법연구회 규약(規約)』을 발행하고 원기 16년(1931) 7월에는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統治組團規約)』을 발행하는데,[1] 앞선 『규약』이 교단의 운영 체계 즉 오늘날의 원불교 『교헌(敎憲)』에 해당하는 상위 법규라면, 『단규』는 구체적인 교화단 조직과 단원(교도) 관리에 대하여 밝힌 하위 법규라 할 수 있다. 『단규』에서는 서문으로 「본회 통치조단 총론」을 실어 먼저 교화단 조직의 취지와 원리를 밝히고, 이어서 본문으로는 세부 조문이 밝혀져 있는데, 이는 다시 「단규 원칙(原則)」 14장과 「단규 세칙(細則)」 3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규』는 총 14장 54조로 구성되어 있다. 『단규』 「원칙」에서는 주로 남녀구별의 조직, 수위단의 조직 및 선거방법, 단의 조직, 단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세칙」은 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연구회 규약』은 주로 취지와 규약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지규약서』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는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 때 임시 인쇄된 『취지규약서』를 개정한 것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교사』, 제2편, 제1장, 5). 아래에서는 이를 『규약』이라고 약칭한다.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규약』은 『단규』로 알려져 있다고 하며(『교사』, 제2편, 제3장, 3), 실제 목차에서도 '단규'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단규』로 약칭한다.

「단규 세칙」 제1장 공부 방면 및 사업 방면
제1절 단원으로서 매일 일기조사법
제2절 단장으로서 단원의 일기성적을 매월 조사하는 방법
제3절 사업에 관한 단장의 겸무 사항[2)]

즉, 『단규(團規)』는 제목 그대로 불법연구회를 통치하기 위한 조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에서는 주로 제일 상위단인 수위단과 그 외 하위단의 조직에 대하여 밝히고 있으며, 「세칙」에서는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단원들로 하여금 주로 상시일기를 기재하게 하고, 단장은 이를 매월 조사하게 하고, 연말에는 다시 신분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세칙」에는 매우 상세하게 실제 기재하는 양식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대체로 '①단원 매월매일 성적조사표·②단원 매일 일기조사법·③유무념 대조표·④신분 보고표' 등이다.

이와 같이 『단규』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단 활동의 중심에는 상시일기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태산 대종사의 구체적인 교화 방법은 교화단이며, 그 교화단 활동의 중심이 바로 상시일기법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화단의 상시일기법은 결국 교도들로 하여금 상시훈련을 통하여 실질적인 기질 변화를 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단규』의 「세칙」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 교단의 상시일기법의 변화를 살피고 이와 함께 상시일기법와 관련된 신분검사와 학위 등급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봄으로써, 소태산 대종사가 본래 의도하고자 했던 원불교 교화단의 핵심인 상시일기법의 중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3)]

Ⅱ. 초기 교단 상시 일기법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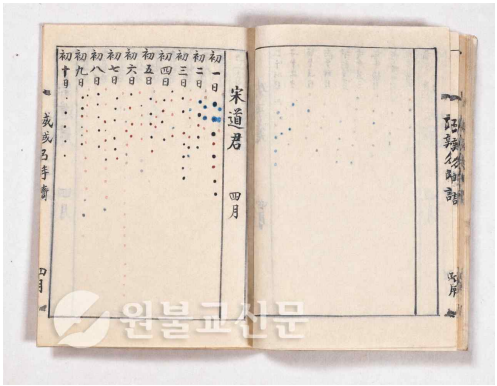
1. 『성계명시독』(원기2·1917)

원불교 상기일기법[4)]의 원형은 『성계명시독(誠誡明示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종사께서는 첫 9인 제자로 하여금 처음으로 교화단을 구성하는데, 원기 2년(1917)에 먼저

2) 『단규』, 「세칙」, 원기 16년(1931) 7월.
3) 상시일기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①「원불교 상시 일기법(日記法) 유·무념 개념의 중의적(重義的) 의미」(염승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81권, 원불교사상연구원, 2019), ②「원불교 일기법의 의의와 현대적 과제」(이홍원·고시용,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107권, 원불교사상연구원, 2026)가 있다. 『단규』에 대한 논문은 없으나, 최정풍 교무가 『단규』의 내용을 해설한 바는 있다(『단(1)』, 도서출판 마음공부, 2025, pp.122-269).
4) 현재 원불교 일기법에는 상기 일기와 정기 일기가 있는데, 넓게 보자면 상시일기는 상시훈련, 정기일기는 정기훈련과 각기 관련이 있다. "재가·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에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지출과 심신 작용의 처리건과 감각·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정전』, 제3 수행편, 제6장 일기법)

8방위의 단원을 구성하고 원기 3년(1918)에 정산 종사를 중앙으로 임명함으로써 비로소 단장인 대종사를 포함하여 ‘10인(人) 1단(團)’의 교화단이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단원들로 하여금 종종 하늘에 제사를 지내어 마음을 결속하게 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천제(天帝)의 말씀이라 하여 실행을 권면하다가, 점차 1·11·21일의 삼순일(三旬日)에 예회 보는 법을 정하고 『성계명시독』이라는 책자를 두어 10일 동안 지낸 마음을 청(靑)·홍(紅)·흑(黑)의 점으로 조사하게 하여 신성과 실행 여부를 대조하게 하였다.[5)]

이러한 『성계명시독』을 통한 마음의 대조방식은 조선말에 유행한 민간 도교의 『공과격(功過格)』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과격』도 선악(善惡)에 대하여 점으로 조사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공(功)’이란 선(善)을, ‘과(過)’는 악(惡)을 의미하며, 그 책의 말(末)에 ‘격도(格圖)’나 ‘격목도(格目圖)’에 1년 간의 점수를 기재하게 하였으므로 그 ‘격(格)’을 의미하는 것이다.[6)]



<그림 1> 정산 종사의 『성계명시독』

그런데, 삼순일에 예회를 볼 때 『성계명시독』으로 신성과 실행 여부를 대조하였기 때문에, 교단 초기의 예회란 곧 현재의 교화단 모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예회의 근본 형태는 교화단 모임이었으며, 그 목적은 상시일기 조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만약에 『성계명시독』을 상시 일기의 원형으로 파악한다면 여기에는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의의가 있다. 첫째로, 먼저 교화단을 결성하고 그 교화단 활동의 핵심을 상시 일기의 기재와 점검에 두었다는 것이다. 즉, 교화단과 상시 일기는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교화단은 10방을 대표하고, 10방의 단원은 우주 전체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각 단원의 수행과 신앙은 곧 10방을 대표하여 상시일기를 기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각 단원의 상시일기 기재가 단순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시방을 응하여 수행과 신앙을 진행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상시 일기의 본래 목적은 당일 당일의

5) 『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 제3장 제생 의세의 경륜, 4.첫 조단과 훈련.
6) 『종교학대사전』, 「공과격(功過格)」.

죄복 결산에 있다는 것이다.[7]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특히 원불교 상시 일기의 본래 의도와 정신은 『성계명시독』에서 찾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 훈련법 제정(원기10·1925)과 상시일기의 시행(원기13·1928-)

대종사께서는 변산에 주석하시던 원기 7년(1922) 9월에 정산 종사를 진안(鎭安) 지방으로 보내면서 인연들을 만나게 하였고, 이에 정산은 만덕산(萬德山) 미륵사(彌勒寺)에서 최도화(崔道華)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는 대종사 오창건·송도성과 함께 친히 그곳으로 행가하시어 최도화·전삼삼(田三三)·전음광(全飮光)·노덕송옥(盧德頌玉) 등을 만나시게 된다.[8] 그리고 원기 9년(1924) 5월에 대종사께서 진안 만덕산에 가시어 그 인연들을 중심으로 하여 김광선이 주관한 가운데 1개월 동안 선(禪)을 나면서 노덕송옥의 손자인 대산 종사도[9] 만나게 되었으며,[10] 이것이 바로 초선(初禪)인 것이다.[11] 물론 이는 비공식적이고 임시적인 선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산 종사가 《회보》에 연재한 『불법연구회 창건사』에 따르면, 대종사께서는 원기 10년(1925) 3월에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시간적으로 보자면 주로 만덕산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식으로 훈련법을 제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교사』에 따르면 이때 발표한 훈련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듬해(원기10·1925) 3월에 새 교법을 지도 훈련하기 위하여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법을 제정 발표하시었다. 정기 훈련은, 매년 정기로 공부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동하 양기(冬夏兩期)의 선(禪)으로 하되, 하선은 음 5월 6일에 결제하여 8월 6일에 해제하고, 동선은 11월 6일에 결제하여 이듬해 2월 6일에 해제하며, 과정은, 염불(念佛) 좌선(坐禪) 경전(經典) 강연(講演) 회화(會話) 문목(問目) 성리(性理) 정기일기(定期日記) 주의(注意) 조행(操行) 수시 설교(隨時說敎) 등 11과로 정하였다. 상시 훈련은, 상시로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조(條)를 정하였고, 이 모든 조항을 실질적으로 대조 연습하기 위하여, 유무념 조사와 상시 일기 조사법을 정하였으며, 문자 서식에 능치 못한 사람을 위하여

7) "'상시일기장이 저승의 재판 문서이다. 일생 동안 꾸준히 사실로만 적어 놓는다면 염라국 최 판관의 문초는 틀릴지 몰라도 이 기록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제 스스로 복이 얼마 쌓였는지 죄가 얼마 쌓였는지 미리미리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대종경선외록』, 8.일심적공장, 4)

8) 『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 제5장 교법의 초안, 4. 창립 인연들의 결속.

9) "김대거(金大擧)는 어려서부터 기개가 호방하고 국량이 광활하여, 일찌기 일생을 천하에 방랑하며 농세(弄世)로써 소일할 뜻이 있었다. 하루는 조모 노덕송옥(盧德頌玉)의 인도로 만덕산에서 대종사를 처음 뵈었다."(『대종경선외록』, 7.교화기연장, 1)

10) 『교사』, 제2편 회상의 창립, 제1장 새 회상의 공개, 4.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

11) 만덕산이 교단 최초의 선지(禪地)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으나, 대산 종사는 만덕산을 초선지로 강조하고 있다. "만덕산 초선 성지는 대종사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처음으로 훈련을 나시고 초창 인연들을 만나 총부 건설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성지이니라"(『대산종사법어』, 제1 신심편, 52). 이 때 초선의 참석자는 소태산·정산·오창건·김광선·전음광·박사시화·이청춘·노덕송옥·전삼삼·이동진화·김삼매화·대산종사이며, 당시 대산 종사는 11세였다.(『원불교대사전』, 「만덕산」)

> 태조사(太調査)법을 두어 유무념을 대조하게 하였다. 특히 일기 조사법은 매일 공부의 실행 여부만 조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혜시 혜수한 것도 대조 기재하며, 공부 사업 생활 삼방면의 의견 제출과 삼십 계문의 범과 유무도 대조 기재하되, 이 공부를 달로 검사하기 위하여 매월 단장 조사법을 정하고, 해로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교무부 보고법을 정하였으니, 그 방법이 심히 간명하고 맥락이 또한 서로 관통하여, 유무식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근기를 따라 바로 정법에 들게 하는 훈련의 강령이 되었다.[12)]

대종사께서는 변산에서 교법의 대강(大綱), 즉 교강(教綱)을 제정하시고, 후천 개벽의 원년(元年)인 원기 9년(1924) 4월에 현재의 익산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열자마자 바로 그다음 달인 5월에 만덕산에서 초선을 나고, 바로 그 이듬해인 원기 10년(1925)에 훈련법을 발표하였다. 이를 보면 훈련법이란 위에 인용한 『교사』의 내용과 같이 곧 새 회상의 새 교법을 지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훈련에는 대종사께서 변산 제법시에 초안한 『조선불교혁신론』과 『수양연구요론』의 이념이 반영되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훈련 가운데에도 상시 훈련을 점검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유무념 조사'와 '상시 일기 조사법'이 함께 제시되었다. 즉, 상시 일기법은 원기 10년(1925)에 이미 상시훈련법의 하위 실천 도구로 구상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유무념 조사와 일기 조사법은 같은 취지로서 다만 문자와 서식에 대한 능(能)·불능(不能)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기 10년(1925)에 정기 일기와 상시 일기법이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후에 일기법이 실제로 시행된 사례들을 《월말통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전인 원기 12년(1927) 3월에는 『불법연구회 규약』이 발행되었으며, 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규약』 개관

구분	항목 및 내용
1.규약	불법연구회의 유래·취지 설명 및 규약의 내용
2.연구인 공부 순서 (13항목)	①연구의 강령건[삼학(三學)]; ②연구시에 진행건[진행4조]; ③연구시에 사연건[사연4조]; ④보통부 10계문; ⑤특신부 10계문; ⑥상전부 10계문; ⑦솔성요론; ⑧재가공부인 고락의 설명; ⑨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⑩재가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사항[상시응용주의사항]; ⑪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교당내왕시 주의사항]; ⑫출가공부인의 책임; ⑬동하 6개월에 매일 공부하는 순서
3.세칙	규약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14항)

이와 같이 『규약』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①규약·②연구인 공부순서·③

12) 『교사』, 제2편 회상의 창립, 제1장 새 회상의 공개, 4.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 『교사』의 이러한 내용은 정산의 『불법연구회 창건사』의 내용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창건사』에도 상시 훈련의 내용으로 「상시응용주의 사항」 6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단규』 「세칙」에는 「재가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 사항」 또는 「재가응용주의 사항」 6조를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상시응용주의사항」이라는 명칭은 원기 17년(1932)에 발행된 『보경육대요령』에 처음 나타나는 용어이다.

세칙’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규약」 부문에서는 불법연구회의 유래·취지 설명과 규약의 내용이 나열되어 있고, 「연구인 공부순서」에는 총 13항목이 기술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칙」은 총 14항으로 되어 있다.

이후로 《월말통신》에는 상시 일기 시행에 대한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창간호인 제1호(원기13·1928)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타난다.

> 매월 16일에 1회씩 단원의 성적을 조사하난 바 단장이 유(有)한 단(團)에난 단장이 하고 무(無)하면 중앙교주(中央敎主)가 대리(代理)로 시행하야 매년 음 12월 26일에난 본회 교무부에 보고함. 조사하난 표준양식은 여좌(如左).[13]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양식이 나타난다.

<표2> 《월말통신》 제1호의 단원 성적 조사표

조사 연월일	출석	공부성적			사업성적			의견제출		
		좌선 염불	교과 연습	취사 실행	정신 근고	육신 근고	금전 혜시	공부 방면	사업 방면	생활 방면
		갑	을	–	–	–	–	–	–	–

제2호(원기13·1928)에서는 단원조사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기사가 나타난다.[14] 그리고는 제1호에 수록된 단원의 성적을 조사하는 양식에 대해 기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7호(원기13·1928)에는 단원 매월 매일 성적조사표 용지를 원기 13년(1928) 9월에 대종사께서 경성에 머무시는 중에 인쇄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그리고 지방의 각(各) 단에서는 『단규』와 조사방식을 잘 강습하여 조속히 이를 실시하도록 광고한 것이다.[15] 그리고, 같은 해인 원기 13년(1928) 11월에 발행된 제9호에서는 단회일에 개회한 후의 순서가 나타난다.[16] 12월에 발행된 《월말통신》 제10호에서는 단회에서 ‘단원 매일일기방법’을 실례로 들어 설명하고 ‘일기기재방법’을 문답하는 모습이 처음 뚜렷이 나타난다.[17] 이는 총부 단회의 기록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매일 일기란 곧 상시 일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10호에서는 경성

13) 《월말통신》 제1호, 4.단원성적조사법, 원기13년(1928), 양5월. 《월말통신》은 대체로 발행 시기가 음력으로 표기되었으므로, 양력에 대해서만 ‘양’이라 표기함.

14) “전신(前信)에 기(旣)히 약보(略報)하얏거니와 단원 조사난 단회의 순서로 부칙(附則)되얏나니 단회를 개(開)한 후에 선(先)히 차(此) 조사를 행할 것인바 조사하는 방법은 여좌(如左)(양식은 전신 참조).”(《월말통신》 제2호, 3.단원조사법 상시(詳示), 원기13년·1928, 양6월)

15) “1.사부주(師父主)께옵서 과반(過般) 경성(京城) 유가(留駕) 중 단원 매월 매일 성적조사표 용지를 인쇄한 바(인쇄 비용은 이공주 自擔 혜시) 경성출장소에셔난 본월(本月) 16일붙허 기(旣)히 실시하엿고 익산 본관에셔난 내월(來月) 16일 위시하야 실시하려 하오니, 각 지방 각(各) 단은 단규 급(及) 조사방식을 잘 강습(講習)하야 조속 실시하심을 망(望)함”(《월말통신》 제7호, 2.인사동정 급 소식, 광고, 원기13년·1928, 9월)

16) ①출석원 점명(點名), ②심경독창(心經讀唱), ③단원성적 조사방법 설명(전음광), ④단원 주의사항 설명(송만경), ⑤본회 창립요론(송도성), ⑥단금수입, ⑦의견심의, ⑧단원성적조사(《월말통신》 제9호, 1.3예회록, 원기13년·1928, 11월)

17) “송도성군이 등석(登席)하야 단원(團員) 매일(每日) 일기방법의 실례(失禮)를 매거(枚擧)하고 다음 김기천 씨 등석하야 단규원칙과 단원주의사항과 단장 급(及) 단원의 의무를 순차로 낭독 우(又)난 설명하얏다.”(《월말통신》 제10호, 사업지계, 1.3예회록, 원기13년·1928, 12월)

지부의 단회 및 예회날에 일기 기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난다.[18] 이와 같이 상시 일기가 당시에 총·지부를 막론하고 실제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상시 일기 기재의 방법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노력의 상황도 보여 주고 있다. 《월말통신》 제11호(원기14·1929)에서는 일기 기재법이 '①재가응용주의사항(6조)·②재가공부인 교무부 와서 하는 책임(6조)·③의견 제출·④30계문'과 명시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다.[19] 이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교단적으로 상시 일기의 기재 방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2호(원기14·1929)에서는 대종사께서 일반 대중의 일기 공부가 능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당시 행하던 야학(夜學)을 중지하고 일기법을 순숙하기를 제안함으로써, 대중은 일기방식의 예(例)에 대하여 일일이 문답하는 모습이 나타난다.[20] 여기에서 교단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 두 가지를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상시 일기가 경계(境界)를 통한 공부란 점이다. 또 하나는 야학(夜學)은 교리 가운데 '타자녀(他子女) 교육'을 실천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문맹(文盲) 퇴치의 일환으로 전개된 매우 중요한 대사회불공(對社會佛供)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데,[21] 대종사께서는 그 보다는 먼저 상시 일기의 기재 방식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야학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엿장사'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단 초창기의 가난한 시기에 총부 유지의 방편으로 총부를 건설한 해인 원기 9년(1924) 12월에 엿 제조와 판매 행상 사업을 전개하여 약 1년 간 지속하였는데, 이익(利益)도 박(薄)하지만 외경(外境)의 접촉이 심하여 공부에 방해될 우려가 있어서 원기 10년(1925) 7월에 폐지하였다고 한다.[22]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대종사께서는 물론 '이사병행(理事竝行)'과 '영육쌍전(靈肉雙全)'을 주장하면서도 '이(理)'와 '영(靈)'이 '주(主)'가 됨을 분명히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상시 일기가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총부 대중은 매일 8시부터 9시까지 모여 함께 상시 일기 기재에 대하여 일일이 문답하면서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상시 일기의 주요 내용이 바로 경계의 인지

18) "12월 16일, 단회...이교무로부터 단회순서, 단원주의사항, 본회창립요론 등을 낭독 설명하야주고 일기기재방법을 문답한 후에 폐회하고...12월 26일, 예회...문제(問題)난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사항」 6조를 가지고 그 뜻과 또 매일 일기조사하야 기재하난 방식을 윤회(輪回) 강담(講談)하니 강담인 씨명은 이공주, 김삼매화, 조전권, 이현공, 이춘풍 선생이엿다."(《월말통신》 제10호, 경성지부 3예회록)

19) "송만경씨 등단하야 「재가응용 주의사항」 6조로써 매일 일기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이동진화씨 등단하야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 6조로써 매일 일기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권동화씨 「의견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일기 기재법을 시(示)하고 전음광군이 등석하야 30계문의 일기기재법을 설명한 후…"(《월말통신》 제11호, 사업지계, 1.3예회록, 원기14년·1929, 1월)

20) "'아즉것 제군(諸君)의 일기 공부가 능(能)하지 못하야 경계를 당해도 당한 줄을 모르고 …제군(諸君)은 당분간 야학을 중지하고 일기의 방식을 순숙(純熟)하도록 연습함이 엇더할꼬' 하섯다. 제인(諸人)은 일제히 낙종청명(樂從聽命)하고 근경(近頃)은 매석(每夕) 8시로 위시(爲始)하야 동(同) 9시까지 약(約) 1시간 동안 대중이 집합하야 당일 각자의 경계 처리한 것과 일기방식의 예(例)를 매거(枚擧)문답하고 파석(罷席)하난 중이다."(《월말통신》 제12호, 익산지편, 사업지계, 2.본관의 근황. 원기14년·1929, 2월)

21) "이로써 새 회상의 교육 사업은, 초기의 영산 학원·총부 학원 및 총부를 비롯한 각처의 야학원 사업과, 해방 후의 국문 강습소 및 학림 교육을 거쳐, 이제 회상의 개교 정신과 국가의 교육 이념을 조화한 본격적 교육사업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원광학원 군(圓光學園群)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교사』, 제3편 성업의 결실, 제2장 목표사업기관의 확립, 2. 교육 사업 진흥과 원광학원군). 이를 통하여 본다면, 교단의 교육사업은 야학 사업에서 비롯하여 학교 건립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22) 『교사』, 제2편 회상의 창립, 제1장 새 회상의 공개, 3. 전무출신의 공동 생활.

(認知)와 그 처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불교 수행의 근간은 경계를 통한 마음공부로서 심신간에 경계를 당하여 경계임을 알아차리고 그 경계를 잘 처리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제12호에서는 익산 경성 영광의 '3예회록'에서 단회일에 단회를 개최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월말통신》 제12호의 단예회록

지역	일자	내용
익산편	음(陰) 2월 16일(3월 26일), 화요일	개회 – 출석원 점명(点名) – 심경(心經) 독창 – 각 단 조직의 이유와 단장 단원의 의무 설명(전음광) – 일기 기재법 설명(송만경) – 단원의 주의사항 설명(송규) – 본회 창립요론 설명(송도성) – 양(兩) 연합단 분석(分席) – 각자의 사업 창립취지 설명 – 1개월간 단금 수입상황 보고[인연측(人聯側)·농연측(農聯側)] – 의견 심의 – 삼삼오오로 둘러앉아 각각 자기에 부촉된 단원의 일기성적조사 – 파석(罷席)
경성편	음(陰) 2월 16일(3월 26일), 화요일	개회 – 출석원 점명(點名) – 『단규』「원칙」 및 「세칙」과 단원예회 순서와 주의사항과 본회 창립요론 등을 낭독 혹은 설명(이공주) – 서로 단원의 의무와 단장의 의무로 문답 – 단금 수합 보고[인연(人聯)·농연(農聯)] – 각 단원의 1개월 성적조사하여 보고 – 폐회
영광편	음(陰) 2월 16일(3월 26일), 화요일	개회 – 출석원 점명(点名) – 심경(心經) 독창 – 연사(演士) 윤회(輪廻) 강연 – 남녀 분좌(分坐) – 『단규』「원칙」 및 「세칙」 낭독(조갑종) – 남녀 양편(兩便)에 대하여 매일성적조사법 설명(송벽조·조갑종) – 약간인 성적조사일기 집행 – 산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3예회란 6일·16일·26일에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16일은 단회일이었다. 식순은 제9호에 나타난 것과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제14호(원기14·1929)에서는 상시 일기와 유무념 대조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이를 위해 검은콩[黑太]·흰콩[白太]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다시 나타난다.[23] 원기 10년(1925)에 대종사께서 훈련법을 발표할 때 이미 상시 일기에는 유무념과 태조사법도 함께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콩[太]'으로 경계를 처리한 결과를 조사하는 방법이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시 일기법이 문자 기록 능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한 등급별·능력별 배려가 제도화되어 실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제18호(원기14·1929)에서는 교법의 우수한 점 가운데 하나로 매일 성적 조사법이, 또한 바로 이어서 유무념 대조법이 거론되고 있다.[24] 제19호(원기14·1929)에는 이공주가 쓴 일기법에 관한 긴 감상문이 실려 있다. 여기에서 그는 세간의 일기(단순 기록)와 연구회의 일기법을 대비시키며, 후자가 '당장에 공부가 능숙되며 스스로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수행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5] 그리고 이어서 이공주는 '재가공부인이 응용할 때 주의사항' 6조와 '재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23) 《월말통신》 제14호, 사업지계, 4.영광지부 3예회록, 원기14년(1929) 4월.
24) 《월말통신》 제18호, 공부지계, 답안: 나의 본 본회의 요법, 가.교법상으로 본 요법, 원기14년(1929) 8월.
25) 《월말통신》 제19호, 공부지계, 감상: 매일성적조사법 이행에 대하야, 이공주, 원기14년(1929) 9월.

하는 책임' 6조에 대하여 그 내용과 의의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성격은 상시 일기의 각 조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그 당시에 상시 일기 기재하는 내역을 살필 수 있는데, 이는 '①재가공부인이 응용할 때 주의사항[6조]·②사업 성적[정신근고(精神勤苦) · 육신근고(肉身勤苦) · 전곡혜시(錢穀惠施)]·③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조]·④의견제출[공부·사업·생활]·⑤30계문 [보통부·특신부·법마상전부]'로서 이는 후에 발행된 『단규』의 「세칙」에 나타나는 내용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공주는 상기 일기 기재의 효과를 해석하고 있는데,[26] 사실 상시 일기를 기재할 때 계문과 같은 내용을 범과(犯過)하고도 범하지 않았다고 속이자니 양심(良心)에 거리끼고 사실 그대로 밝히자니 공부한다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고충이자 감정인데 이를 잘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성계명시독』을 실행할 때도 나타난다. 기록에 따르면 대종사께서는 사실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곧 진리를 속이는 것으로 경계하고 있다.[27] 물론 이는 교단 초창기에 9인 제자들을 회상의 모범적 제자로 철저하게 훈육하는 과정으로서 일반적인 일기 기재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려는 일반적인 심리(心理)를 잘 드러내는 일단(一端)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공주는 그러한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게 된다고 대중을 설득하고 있다. 즉, 상시 일기를 기재하는 사람이 느끼는 양심에 반하는 마음과 수치심 때문에라도 점점 공부가 진행될 수 있다는 논리로 상시 일기 기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제20호(원기14·1929)부터는 일기성적조사, 단증·일기표·유무념표의 배부·관리 담당자 지정 등 행정적 정례화가 이어지는데, 이와 같이 《월말통신》에는 상시 일기 시행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원기 10년(1925)에 훈련법을 발표하고, 원기 12년(1927)에 『규약』을 간행한 이후에 일기법이 시행된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 《월말통신》에 나타난 상시 일기 시행 내용

시기	호수	핵심 내용
원기13(1928).양5	제1호	단원 성적 조사표 양식
원기13(1928).양6	제2호	단원 성적 조사 기재 방식
원기13(1928).9	제7호	대종사 경성에서 단원 매월 매일 성적조사표 용지 인쇄. 『단규』 및 조사방식에 대해 강급하고 실시할 것 권장.
원기13(1928).12	제9호	단회의 순서 나타남. ①출석원 점명(點名), ②심경독창(心經讀唱), ③단원성적 조사방법 설명(전음광), ④단원 주의사항 설명(송만경), ⑤본회 창립요론(송도성), ⑥단금수입, ⑦의견심의, ⑧단원성적조사

26) "그래서 매일 경과한 사실을 기재할 때에 범(犯)하고 안이 범(犯)하얏다 하기는 양심(良心)에 붓그럽고 범과한 사실대로 기재하자 하니 또한 공부자(工夫者)로서난 수치(羞恥)한 일임니다. 시고(是故)로 조심이 되야 자연 범과의 번수가 점점 줄어 들어감니다."(《월말통신》 제19호, 공부지계, 감상: 매일성적조사법 이행에 대하야, 이공주, 원기14년·1929, 9월)

27) 『대종경선외록』, 4.초도이적장, 4.

원기13(1928).12	제10호	총·지부 단회 및 예회에서 '단원 매일일기방법' 실례 설명·문답.
원기14(1929).1	제11호	상시 일기 기재법 설명: ①재가응용주의사항(6조), ②재가공부인 교무부 와서 하는 책임(6조), ③의견 제출, ④30계문
원기14(1929).2	제12호	야학을 중지하고 총부 대중 저녁 8-9시까지 일기 기재
원기14(1929).4	제14호	태조사(太調査): 일기·유무념 이행 불능자에 백흑태(白黑太)로 유무념 대체
원기14(1929).8	제18호	교법의 우수성 가운데 입선전문훈련법, 매일 성적 조사법, 유무념대조법 등을 거론함.
원기14(1929).9	제19호	이공주 감상문: 상시일기의 의의, 기재 방식, 기재 효과, 기재 독려 등에 대하여 밝힘.
원기14(1930).10~	제20호 이후	일기성적조사, 단증·일기표·유무념표의 배부·관리 담당자 지정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원기 10년(1925)에 대종사께서 훈련법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미 상시 일기 기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원기 12년(1927)에 발행된 『규약』에서는 상시 일기의 주요 기재 내용이 되는 '①삼학 팔조·②30계문·③재가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사항·④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등이 명문화되었고, 이후에 상시 일기가 실제 실행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은 계속해서 상시 일기 기재 방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대종사께서 야학을 중지하면서까지 상시 일기 기재를 독려함을 알 수 있으며, 이공주는 감상문을 통하여 상시 일기 기재하는 방식과 의미를 상세하게 밝히는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기 기재에 능하지 못한 단원들이 대신에 상시 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무념이나 태조사의 방법을 근기에 맞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기 10년(1925)에 훈련법에서 상시 일기법을 발표한 이후로, 그 상시 일기가 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꾸준히 상시 일기 기재를 교육하고 실행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3. 『단규』 「세칙」의 상시일기법(원기16·1931)

『단규』는 원기 16년(1931) 7월에 발행되었는데,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시 일기법은 이미 그 이전인 원기 10(1925)~15년(1930)에 걸쳐, ①상시훈련법의 실천도구로 창안되고, ②단회 차원에서 보급·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규약』에도 「세칙」이 있고 『단규』에도 「세칙」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단규』 「세칙」은 이러한 상시 일기에 대한 기존의 실천 내용을 다시 집약하여 교화단 조직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제정하여, '집대성·성문화'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칙」의 일기법 조항은 무(無)에서 갑작스럽게 창안된 규정이 아니라, 그 동안 현장에서 축적된 실천을 정식 조문화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단규』 「세칙」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5> 『단규』「세칙」의 구성

세칙에 대한 설명〔총설〕	
제1장	제1절: 단원의 매일 일기 조사법
	제2절: 단장의 매월 조사법
	제3절: 사업에 관한 단장의 겸무
부칙(附則)	

이를 살펴보면 실제적으로는 총 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3절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그 3절은 다시 총 제11조로, 그리고 「부칙」은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칙」의 제1조에는 '상시[매일] 일기'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이는 매일 일기, 즉 상시 일기는 전교도로 하여금 상시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단원 각자가 상시훈련의 성적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각자 공부의 잘잘못을 알아 공부심을 스스로 권면하고 촉진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28] 그리고 「세칙」에는 총 5종의 기재 양식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 『단규』「세칙」의 기재 양식 내용

조항			제목	양식	내용
제1장	제1절	제2조	단원 매월 매일 성적 조사표	재가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 사항	1조·2조·3조(교과서의 음강·의지해석·한자연습)·4조·5조·6조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1조·2조·3조·4조·5조·6조
				사업성적	①본회중·②육친관계간·③기타외인간 [정신근고·육신근고·전곡혜시]
				부채표	①본회중·②육친관계간·③기타외인간 [정신근고·육신근고·전곡혜수]
				의견제출	공부방면·사업방면·생활방면
				십계문	보통부·특신부·법마상전부
		제4조	공부인 유념무념 매일 응용시 대조표		유념처리·무념처리
	제2절	제6조	단원 매년 매월 성적 조사법	공부 성적	염불좌선·교과서(음강 의지해석 한자연습)·취사실행
				사업 성적	정신근고·육신근고·전곡혜시
				부채표	정신근고·육신근고·전곡혜수
				의견 제출	공부방면·사업방면·생활방면
		제8조	단원 유무념 성적 매월 조사표		월별
		제9조	신분검사표	부당등급	30계문+쟁힐·허위·편심·아상[34항]
				당연등급	유래지위·발원·신식·구식·선문·한문·산술·어법·농업·상업·공업·신성·수시변역·심사결단·보화·공심·은악·양선·성리·전일·신체건강·사실[22항]
			수지대조	혜수·혜시·수입·지출·대부·차용	

28) "제1조 재가·출가를 막론하고 상시훈련(常時訓練)을 고루 시키기 위하여 매일일기법(每日日記法)을 제정하였다. 이는 단원 각자로 하여금 상시훈련 성적을 매일일기표에 기재하여, 자기가 자기 공부의 선불선(善不善)을 알게 하며 자기가 자기의 공부심을 스스로 권면하게 하는 것으로서..."(『단규』, 「세칙」, 제1조)

이와 같이 양식은 대체로 '①단원 매월 매일 성적 조사표, ②공부인 유념무념 매일 응용시 대조표, ③단원 매년 매월 성적 조사법, ④단원 유무념 성적 매월 조사표, ⑤신분검사표'라는 5종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유무념 성적은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의미상으로는 3종으로 볼 수 있다. 즉, 대체로 단원들은 매일 일기를 기재하여 매월 단회 때에 일기 조사표를 단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단장은 수합하여 교무부에 보고하며, 매년 연말에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단원의 신분 검사를 하여 단원의 수행 및 훈련 정도를 단장은 다시 교무부에 보고 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칙」의 내용은 주로 '①매일 단원 일기·②매월 단회에서 단장 보고·③매년 신분검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먼저 '단원 매월 매일 성적 조사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가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한 조사 양식은 다음과 같다.[29]

<표7> 『단규』「세칙」의 '재가 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 사항' 기재 양식

재가 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 사항														
조사 연월일	1조	2조	3조 교과서()						4조		5조		6조	비고
			음강(音講)		의지 해석		한자 연습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창 연월일	(실행 여부)*	(실행 여부)*											(실행 여부)*	
//														
//														
1개월 평균														

이러한 내용을 『규약』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8> 『규약』의 '재가 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한 『단규』「세칙」의 기재 방식

조	『규약』의 내용	『단규』「세칙」의 기재 방식
제1조	응용하난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일.	당일 경계수 반이상 이행시 실행으로 기재
제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와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일.	당일 경계수 반이상 이행시 실행으로 기재
제3조	노는 시간이 잇고 보면 취지 · 규약 · 경전 연습하기를 주의할 일.	지정 교과서에 대한 ①음강·②의지 해석·③한자 연습의 실행 시간
제4조	취지 · 규약 · 경전 연습하기를 다ᄒᆞ 맛친 사람은 문목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일.	시간
제5조	석반을 먹은 후에 가산에 대한 사무가 혹 잇스면 다ᄒᆞ 맛치고	시간

29) 단,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논자가 삽입한 문구는 '*' 표시를 하였음.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 잇든지 야반청신(夜半淸晨)이든지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야 염불하기를 주의할 일.	
제6조	모든 사무를 처리한 후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야 보되 정신수양과 사리연구와 작업취사와 신분의성이 처리건에 골나 마졌난가 대조하며 불신탐욕나우에 범과가 되얏난가 생각하여 보며 솔성요론과 계문에도 범과가 되얏난가 생각하야 대조하기를 주의할 일.	당일 경계수 반이상 이행시 실행으로 기재

이를 보면 제1·제2·제6조는 당일 경계(境界) 수(數) 가운데 반수 이상 이행하였을 경우에 실행한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6조의 내용을 현재의 『정전』과 비교해 보면,[30] 현 『정전』에서는 상당히 축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대한 실행 대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대조 조목의 내용이란 바로 '①삼학·②팔조·③솔성요론·④계문'에 대한 것임을 『단규』「세칙」의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조 '문목 의두 연마'와 제5조 '염불'은 실행한 시간 수를 시(時)와 분(分)으로 계산하여 기재한다.

특이한 점은 제3조이다. 제3조에서는 '취지·규약·경전'을 연습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 때 임시 발행한 것이 『취지규약서』이고 원기 12년에 다시 발행한 것이 『규약』이며, 경전으로서는 규약과 같은 시기에 발행된 『수양 연구 요론』이 있다. 따라서 교과서란 대체로는 『규약』과 『요론』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서에 대하여 3가지 방면으로 학습하는데, '①음강·②의지 해석·③한자 연습'이다. 여기에서 '음강(音講)'이란 교과서를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지 해석'은 그 뜻을 음미하여 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자 연습'이 학습 내용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첫째로 교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원불교의 주요 교리는 전부가 다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상식적 차원이라는 것이다. 신분검사의 내용 가운데에는 신식(新識)과 구식(舊識) 그리고 선문(鮮文)·한문(漢文)·산술(算術)·어법(語法) 등이 나열되어 있다. 신식이란 신(新) 지식(知識)을 의미하고 구식이란 구 지식, 선문이란 조선글, 한문은 한자, 산술은 산수 계산, 어법은 말하는 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기 위한 방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소태산은 「최초 법어」 '수신의 요법' 제1조에서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31]이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맥락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원 매년 매월 성적 조사법은 조금 내용이 달라진다.

30) "6.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 제2절 상시 훈련법, 1. 상시 응용 주의 사항)

31) 『정전』, 제3 수행편, 제13장 최초법어.

<표9> 단원 매년매월 성적 조사법 양식

<table>
<tr><td colspan="15">단원 매년매월 성적조사법</td></tr>
<tr><td colspan="2">원명부 번호</td><td colspan="3">제 호</td><td rowspan="2">관할
교무</td><td colspan="3" rowspan="2"></td><td colspan="2">방위</td><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조사 회수</td><td colspan="3">제 회</td><td colspan="2">제 단</td><td>씨명</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조사
연월일</td><td rowspan="3">출석별</td><td colspan="5">공부 성적</td><td colspan="3">사업 성적</td><td colspan="3">부채표</td><td colspan="3">의견 제출</td></tr>
<tr><td rowspan="2">염불
좌선</td><td colspan="3">교과서(　　)</td><td rowspan="2">취사
실행</td><td rowspan="2">정신
근고</td><td rowspan="2">육신
근고</td><td rowspan="2">전곡
혜시</td><td rowspan="2">정신
근고</td><td rowspan="2">육신
근고</td><td rowspan="2">전곡
혜수</td><td rowspan="2">공부
방면</td><td rowspan="2">사업
방면</td><td rowspan="2">생활
방면</td></tr>
<tr><td>음강</td><td>의지
해석</td><td>한자
연습</td></tr>
<tr><td>년월일</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년
평균</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15">시창 년 월 일　　관할단장:　　본단원:</td></tr>
<tr><td colspan="15">불법연구회 교무부 어중</td></tr>
</table>

여기에서는 공부 성적으로 ①염불 좌선·②교과서·③취사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어 삼학으로 요약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교과서에는 여전히 ①음강·②의지 해석·③한자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칙」에 따르면 취사 실행은 30계문과 재가응용주의사항 6개조 전체를 통합하여 조사하도록 되어있는데,[32] 사실상 재가응용주의사항 제6조의 내용만 보아도 '①삼학· ②팔조·③솔성요론·④계문'에 대한 범과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30계문은 이미 그 제6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공부 성적은 재가응용주의사항 6조 전체를 삼학(삼강령)으로 축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원 매일 조사표에는 사업성적과 부채표가 '①본회중·②육친관계간·③기타외인간'이라는 3부문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매월 조사표에는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본회(本會) 중(中)'이라는 것은 교단 내에서의 내역을 말하고, '육친관계간'이란 가족 친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기타 외인간'은 그 밖에 사람들에 대한 내역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의견 제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세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매우 상세하게 상시 일기의 기재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월말통신》을 통해서 보았듯이 단회 때나 예회에서 일기 기재 방식에 대해서 계속하여 설명하고 교육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단규』 「세칙」에서는 일기 기재 방식을 통일하고 세밀화하여 누가라도 『단규』를 보면 바로 상시 일기 기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둘째로 의견 제출이 중요한 부분을

32) "취사실행이라 함은 공부자로 하여금 당연지사(當然之事)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실행하고, 부당지사(不當之事)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사(捨)하야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길이니, 즉 재가응용주의사항 6조와 30계문을 통합(統合)하여 조사하는 조건으로 정함."(『단규』 「세칙」, 제1장, 제2절, 제5조, 3. 취사실행의 내역)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종사께서는 『단규』의 「총론」에서 조단(組團)의 의미를 대종사 단독으로 전체 회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훈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조단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대종사의 가르침이 하향(下向)으로 전달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의견 제출은 단원들이 단장들에게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향식(上向式)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화단의 원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상의(上意)가 하달(下達)되고, 다시 하의(下意)가 상달(上達)되는 쌍방향식 통치 제제의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상시 일기가 개인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매월 단장에게 보고되고 이는 다시 교무부로 보고되고, 이는 연말에 신분검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분검사는 학위 등급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후술하기로 한다. 넷째로 상시 일기의 내용이 상시 훈련을 진척시키기 위함인데 상시 훈련이란 곧 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하는 훈련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재가란 전문 입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재가가 신분으로서의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라는 의미 보다는 상시 훈련의 상황에 놓인 공부인이라는 의미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종사의 인도상(人道上) 요법을 강조하는 측면, 그리고 불법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라는 측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상시 일기의 내용이 매우 폭넓고 방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후에 간소화된 일기법이 나타나는 계기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로 「부칙」에서는 이러한 「세칙」의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교무부에서 기초하여 정수위단의 심의를 거쳐 종법사 감정으로 결정한다고 밝힌 점이다. 실제로 그 이후에 「세칙」의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그만큼 「세칙」의 내용은 중요하여 함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상시 일기의 형식 및 내용이 대종사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상시 훈련의 기본 방침이며 방식임을 나타낸대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불교 상시 일기법의 내용이나 그 실행 방식은 항상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세칙」에 바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 『정전』에도 상시 일기법이 있으나, 이는 매우 간소화된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정전』의 상시 일기법의 기재 방식은 바로 『단규』의 「세칙」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4종 일기법 제정(원기23·1938)

앞에서 보았듯이 원불교의 상시 일기법은 처음에 『성계명시독』을 기원으로 하여 《월말통신》을 통하여 점차 실행이 보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단규』에 이르러 비로소 교서에서 정식으로 그 기재법이 성문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시 일기의 내용은 《월보》에서도 단회일을 중심으로 하여 계속해서 나타난다.

먼저 『단규』가 발행된 그 이듬해인 원기 17년(1932) 4월에는 『보경 육대요령(寶經六大要領)』이 발간되었는데,[33] 이는 상시 일기 기재에 있어서 교과서의 내용이 개정 혹은 추가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월보》 제39호(원기17·1932)에서는 『단규』를 강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34] 이로써 『단규』가 교서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보》 제42호(원기17·1932)에는 총부 예회일에 '보경(寶經) 음강조사(音講調査)를 하고 파귀(罷歸)하다.'란 내용이 나타나는데,[35] 이는 이미 발행된 『보경 육대요령』에 대한 학습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월보》 제44호(원기18·1933)에는 삼산 김기천의 「교리송」 상·하 2편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기 일기'란 내용이 나타난다.[36] 그리고 제45호(원기18·1933)에서는 '상시 일기'란 용어가 나타난다.[37]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일기법'이라는 명칭이 하나의 통칭에서 벗어나 '상시일기'·'정기일기'로 용어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여전히 상시 일기가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보》 제47호(원기18·1933)에는 단회날에 '일기감정(日記勘定)'과 '일기조사(日記調査)'가 별도로 진행된 기록이 명시되어 있으며,[38] 또한 '보경 음강(寶經音講) 및 의지 문답' 혹은 '보경의(寶經義) 문답'이라는 내용도 나타나는데, 이는 『육대요령』을 음강하거나 그 의지에 대하여 문답하면서 학습하였다는 것이다.

원기 18년(1933) 6월에 《월보》가 폐간되고, 그해 9월에 《회보》가 창간되었는데, 《회보》 제47호(원기23·1938) 9월에서는 교무부 명의로 '4종 일기(四種日記)' 시행에 대하여 글을 싣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일기법을 네 종류로 공식 구분하고 있다. 즉, 문자 기록에 능한 이는 정식일기(正式日記) 또는 간이일기(簡易日記)를, 그리고 문자 기록에 능치 못한 이는 유무념대조 또는 태조사를 하도록 한 것인데,[39] 이는 기존의 '①상시일기·②유무념·③태조사'라는 3종의 상시 일기에서 '간이일기'를 추가함으로써 4종의 상시 일기로 밝힌 것이다. 그리고 같은 《회보》 제47호에서는 이 글에 바로 이어 '각지방 현재 일기 실행인 씨명'이라는 제목 아래에 ①영광길룡지부·②영광신흥지부·③진안마령지부·④좌포출장소·⑤부산하단지부·⑥부산초량지부·⑦부산남부민지부 등 총 7지부에서 '①정식일기·②간이일기·③유무념 대조·④태조사', 즉 4종 일기를 실행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이후 《회보》 제48~50호(원기23·1938)에서는 '각 지방 현재 일기 실행인 씨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별·유형별(정식일기/간이일기) 실행자 명단이 연속 발표되었으며, 또한 제50호에는 일기법이 시행된 최초로부터 만 10년간 계속 실행한 회원들을 특별히 조명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40] 그리고는 10년간 지속한 이가 '이공주·전음광·박사시화·권동화'임을 밝히고 있다.

33) 『교사』, 제2편 회상의 창립, 제3장 교단체제의 형성, 2.초기 교서들의 발간.
34) 《월보》 제39호, 각지회합, 총부, 원기17년(1932) 8월.
35) 《월보》 제42호, 각지회합, 총부, 원기17년(1932) 11월.
36) "정기일기(定期日記) 하난 것은 시간수를 기재(記載)하야...정기일기(定期日記) 식힌 것과/주의 조행(操行) 조사법(調査法)은 작업취사(作業取捨) 방편(方便)이요..."(《월보》 제44호, 회설, 교리송(하), 원기18년·1933, 1월)
37) "3월 16일...김기천씨 등단하야 상시 일기법의 의두(疑頭)를 문답하고…"(《월보》 제45호, 각지회합, 익산총부, 원기18년·1933, 2-3월)
38) "영광지부...16일...후(後) 2시~3시: 일기감정(日記勘定). 이건양...경성지부...16일...후(後) 3시~5시: 일기조사(日記調査)"(《월보》 제47호, 각지회합, 원기18년·1933, 5월).
39) "그런대 이 일기법 중에도 4종의 구별이 있으니 문자(文字)의 기록에 능한 분은 정식일기나 간이일기를 하고 문자기록에 능치 못한 분은 유무념대조나 태조사(太調査)를 함이 가(可)함니다."(《회보》 제47호, 교무부, 「사종일기 시행에 대하야」, 원기23년·1938, 9월)

이를 통해서는 원기 13년(1928, 《월말통신》 제10호) 무렵을 일기법의 사실상 출발점으로 당대에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회보》 제59호의 「일기에 대한 단장(團長) 조사 방법」에서는 직접적으로 『단규』 「세칙」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41] 이 기사는 명시적으로 『단규』 50페이지에 실려 있는 「세칙」 가운데 단장이 조사하는 교과서란 『단규』 이전에 발행된 『불법연구회 규약』(취지규약서)를 표준하여 제정된 것임을 밝히고, 이후에는 『단규』(원기16, 1931) 자체를 포함하여 『규약』(원기12, 1927)과 함께 혹은 그 이후에 발간된 새로운 교서, 즉 『수양연구요론』(원기12, 1927)·『보경육대요령』(원기17, 1932)·『불법연구회 회규(개정판)』(원기19, 1934)·『보경 삼대요령』(원기19, 1934)·『조선불교 혁신론』(원기20, 1935)·『예전』(원기20, 1935)·『회원수지』(원기21, 1936) 등도 교과서에 포함시켜 성적을 조사하는 방법을 제정하였다는 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실제로 『육대요령』·『수양연구요론』·『불교혁신론』·『삼대요령』·『단규』·『예전』·『회원수지』·『규약서』의 순서로 성적을 조사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하여 원기 24년(1939) 시점에도 『단규』의 「세칙」이 일기·성적조사 방식의 '표준(원본)'으로서 명시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간이일기'를 매월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42] 즉, '①염불·좌선·교과서 연습, ②의두연마, ③의두양해, ④전문입선, ⑤예회출석, ⑥30계문'이 간이일기 매월 조사의 주요 내용인데, 이는 매월 조사이므로 간이 일기의 매일 기재 방법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서는 간이 일기의 매일 기재 양식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간이 일기의 매월 조사법 내용은 '상시응용주의 사항' 6조와 '교무부 와서 하는 책임' 6조를 통합한 것인데, 이러한 관계를 그 《회보》에 실린 기사를 참고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0> 간이 일기 매월 조사표의 내용 분석

매월 조사 내용	해당 조목	조목 내역
①염불·좌선·교과서 연습	「상시 응용주의 사항」 제3조·제5조	제3조: 취지 · 규약 · 경전 연습 제5조: 염불
②의두연마	「상시 응용주의 사항」 제4조	문목 의두 연마
③의두양해	「교무부 와서 하는 책임」 제3조	특별한 의심 교무부 양해
④전문입선	「교무부 와서 하는 책임」 제4조	선원 전문 공부(2-3개월)
⑤예회출석	「교무부 와서 하는 책임」 제5조	3·6예회 공부
⑥30계문	「상시 응용주의 사항」 제6조 일부	30계문만 점검

40) "일노써 일기법이 시행된 최초(시창13년도) 붙어 시작하야 우금 만 10년간을 계속 실행한 대성심가(大誠心家) 제씨(諸氏)와 기차(其次)로 오년 이상을 계속 실행한 회원을 소개코자 하오니 삼가히 사표(師表)를 삼을찐저-"(《회보》 제50호, 원기23년·1938, 12월)

41) "(1)각 교과서 단장 조사방법: 본회 단규세칙 제50페지 교과서 연습에 대한 조사방법은 본회 전(前) 규약서를 표준하야 제정된 것임으로 금반 기후(其後)에 편집된 육대요령, 수양연구요론, 혁신론, 삼대요령, 단규, 예전, 회원수지 회규 등의 전권(全卷) 책(冊) 장수(章數)를 분할(分割)하야 단장 조사방법을 제정 하엿사오니…"(《회보》 제59호, 교무부, 「일기에 대한 단장(團長) 조사 방법」, 원기24년·1939, 10월)

42) "(2)간이일기 매월 조사하는 방법: 1.염불 좌선 교과서연습은...2.의두연마는...3.의두양해(疑頭讓解)는...4.전문 입선은....5.예회출석은…6.30계문은 원일기(元日記) 매월 조사방법과 동일히 하되 단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만 갖이 보지 않이함."(위의 글)

이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원일기(元日記), 즉 정식 일기에서는 '취사 실행'이 상시 응용주의 사항 제6조의 '①삼학·②팔조·③솔성요론·④계문' 전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간이일기에서는 그 가운데 30계문만 조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계산하기 수월하도록 배려하여 그야말로 '간이'하게 조사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보》 제47호(원기23·1938)에서부터는 '4종 일기' 즉 4종의 상시 일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간이 일기와 함께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회보》에 나타난 '사종일기' 시행 내용

호수	발행 연월	제목	간이 일기 내용
제47호	원기23(1938), 9.	사종일기 시행에 대하여(교무부)	"그런대 이 일기법 중에도 4종의 구별이 있으니 문자(文字)의 기록에 능한 분은 정식일기나 간이일기를 하고..."(간이일기 실행인 명단)
제48호	원기23(1938), 10.	사종일기 시행에 대하여 (전월 계속: 교무부)	(간이일기 실행인 명단)
제49호	원기23(1938), 11.	사종일기 시행자 발표(전월 계속)	(간이일기 실행인 명단)
제59호	원기24(1939), 10.	일기에 대한 단장 조사 방법 (교무부)	'간이일기 매월 조사하는 방법'

이와 같이 원기 23년(1938)에는 기존에 대체적으로 시행되던 3종의 상시 일기 체제에서 간이 일기가 추가 되어 '4종 일기' 체제로 전환된다. 그리고는 4종 일기 시행에 대하여 독려하며 심지어는 그 명단을 교단의 기관지에 발표하기까지 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상시 일기 기재에 대한 대종사의 의지가 지속해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정식 일기가 너무 기재하기가 번거하여 대중들이 기재를 기피할 경우를 생각하여 '간이일기'라는 형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중들이 상시 일기 기재를 하도록 문호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시 일기 기재자를 발표하는 것은 더욱더 상시 일기 기재를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Ⅲ. 신분 검사와 학위 등급

『단규』「세칙」에 따르면 상시 일기법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신분 검사로 귀결되고, 이러한 신분 검사는 다시 학위 등급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상시일기의 의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먼저 신분검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상시 일기와 신분 검사가

학위 등급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분 검사

정산 종사의 『창건사』에 의하면 원기 12년(1927) 2월에 대종사께서는 공부인의 신분 검사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분 검사법의 의미는 공부인의 ①선악 및 죄복의 대조, ②복록과 부채의 대조, ③생활 예산 점검을 통하여 공부인이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키고 죄를 버리고 복을 취하는 길을 스스로 촉진하게 하고, 또한 교단의 인재 선택에도 필요한 방법을 얻기 위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제2학기 동선 해재 시에 입선인과 일반 간부 및 요인들로 하여금 1차씩 행하는 법이다. 여기에서도 이 법이 교단의 인재(人材) 선택의 한 방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43] 다만, 여기에서 제2학기(學期)라는 것은 하선(夏禪)에 이은 동선(冬禪)이란 의미로 읽히는데, 그러므로 동선에 참석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 감사법은 일반 간부와 요인들도 함께 1차례씩 행하는 법이라고 하고 있다. 『교사』에 따르면 하선(夏禪)은 음 5월 6일에 결제하여 8월 6일에 해제하고 동선(冬禪)은 11월 6일에 결제하여 이듬해 2월 6일에 해제하였기 때문에,[44] 신분검사는 음력 2월 6일에 해제하면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신분검사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달인 원기 12년(1927) 3월에 발행된 『규약』의 「세칙」에는 먼저 '임원 선거 규약'이 나타난다.[45] 이에 따르면 중임은 항마부에서, 보통임원은 특신부 이상과 ①유공안(有巧案)·②시봉안(侍奉案)·③혜시안(惠施案)·④저축안(貯蓄案)이라는 4개 안(案)에 등록한 사람에서 선정한다. 따라서 임원의 선정은 육명부 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또한 4개 안의 내용을 볼 때 이는 단원의 매월 성적 조사 혹은 신분 검사의 수지 대조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신분검사가 임원의 선정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약』의 「세칙」에는 '상벌 규약'이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상(賞)은 승급이고 벌(罰)이란 강급이다. 그리고 강급 할 명부가 없을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교단에서 제명되며, 제명된 사람이 다시 자기의 가정이나 동리, 그리고 교단에 그 개과된 증거가 나타난 후에 다시 입회를 신청하면 허가된다.[46] 이와 같이 『규약』에서는 상벌 즉 승급·강급의 길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규약』의 「세칙」에는 바로 이어 '임원 명의 순서'를 총 24종(種)으로 나열하고 있는데,[47] 여기에서 보면 '가산수찰원(家産修察員)'이란

43) "또는 본회의 인재(人材) 선택하는 대에도 그 필요한 방법을 얻기 위함인바..."(《회보》 제49호, 정산, 「불법연구회창건사」, 제26장 신분검사법의 발표, 원기23년·1938, 11월)

44) 『교사』, 제2편 회상의 창립, 제1장 새 회상의 공개, 4.훈련법의 발표와 실시.

45) "10.회무소(會務所)나 연구소(研究所)나 임원(任員)이 대소(大小)가 잇스니 중임(重任)은 법강항마부에 등록한 연구인에서 선정하고 보통임원은 특신부 이상과 유공안(有巧案)과 시봉안(侍奉案)과 혜시안(惠施案)과 저축안(貯蓄案)에 등록한 사람으로 자격을 택취(擇取)하야 선정하기로 홈"(『규약』, 「본회의 세칙」, 4.임원 선거 규약, 원기12년·1927, 3월)

46) 『규약』, 「본회의 세칙」, 6.상벌규약.

47) ①총재(總裁), ②회장(會長), ③서무부장(庶務部長), ④교무부장(教務部長), ⑤연구부장(研究部長), ⑥농업부장(農業部長), ⑦상조조합부장(相助組合部長), ⑧식사부장(食事部長), ⑨세탁부장(洗濯部長), ⑩신분검사

명의도 나타나며 이는 개인 가산에 대해서 조사하는 임원으로 보인다. 10번째에 해당하는 임원이 바로 '신분검사원'이다. 실제로 신분검사원이 배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규정』 상에는 분명히 신분검사원이란 직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규약』의 '해재시(解裁時) 검사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이는 선을 해제할 때 삼학의 실력을 검사하도록 한 규정인 것이다.[48] 그런데, 《월말통신》 제18호(원기14·1929)에는 교법의 우수한 점 가운데 하나로 '신분검사법'을 들면서, 이는 '연 2회' 실시한다고 나타난다.[49] 여기에서도 신분 검사의 대상은 선원(禪院)에 입선(入禪)한 선객(禪客)들과 임원(任員)이라고 되어 있다.

원기 16년(1931)에 발행된 『단규』의 「세칙」에는 신분검사에 대한 내용이 정식으로 나타난다. 먼저 「세칙」의 제9조에서는 매년 연말에 단원의 신분을 검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50] 즉, 단원의 기질 변화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대조하기 위하여 매년 연말에는 신분을 검사하여 교무부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분 검사의 보고 양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12> 『단규』「세칙」의 신분보고 양식 구성

신분보고표[표지]	①신분보고 내용 설명의 개요, ②등급을 정하는 법
부당 등급	총 34항
당연 등급	총 22항

즉, ①'신분보고표' 표지와, 내용으로서의 ②'부당 등급'과 ③'당연 등급'이다. 표지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신분보고 내용 설명의 개요'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51] 신분 검사는 제9조의 내용과 같이 단원의 공부와 훈련의 결과에 의한 기질 변화 정도를 대조하는 것이다.

원(身分檢查員), ⑪문부검사원(文簿檢查員), ⑫재무(財務), ⑬서기(書記), ⑭빈객응접원(賓客應接員), ⑮감원(監院), ⑯간병(看病), ⑰가산수찰원(家産修察員), ⑱물품장주(物品藏主), ⑲공양주(供養主), ⑳물품구입원(物品購入員), ㉑종두(鍾頭), ㉒감욕(監浴), ㉓수화감임(水火監任), ㉔회중사자(會中使者)(『규약』, 「본회의 세칙」, 7.임원명의순서)

48) "연구인의 3개월 수양력을 검사하며 연구력을 검사하며 마음 작용과 육신작용을 검사하며..."(『규약』, 「본회의 세칙」, 13. 해재시 검사규약, 원기12년·1927, 3월)

49) "19.신분검사법: 본회에서는 매년 2차식 선원(禪員) 급(及) 임원의 신분을 검사하야 공부와 사업에 진퇴된 성적을 보난 것."(《월말통신》 제18호, 공부지계, 답안: 나의 본 본회의 요법, 가.교법상으로 본 요법, 원기14년·1929, 8월)

50) "**제9조 단장은** 모든 교리와 제도로써 매월 단원의 성적을 조사하여 감정하지만, 그 교리와 제도로 훈련을 받은 결과 기질 변화(氣質變化)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가를 대조하기 위하여, **매년 연말이면 단원의 신분을 검사하여 교무부에 보고한다**."(『단규』, 「세칙」, 제9조)

51) "1.이 신분보고를 행함은 연구인의 시비선악을 알며 또는 심지(心志)의 주착(注着)한 바와 행동의 본말을 알아 수양과 연구와 취사법을 인도(引導)하는 데 그 적당한 방법을 득하게 위함이요, 2.이 신분을 매년 제2 학기 동선 해재시에 1차 씩 보고하여 본회(本會) 교무부(敎務部)에 접수하여 두었다가 일후(日後) **본회에서 용인(用人)하는 데 그 선정(選定) 방법에 필요를 득하기 위함**이요, 3.공부를 하기 전과 공부를 한 후에 기질변화(氣質變化)가 잘 되었는가 대조(對照)하며 또는 공부를 시작한 후에도 거년(去年)의 정도와 금년의 정도를 대조하여 기질변화의 잘 되고 못되는 것을 알기 위함이다."(『단규』, 「세칙」, 신분보고표)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그 의미에 대하여 3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단원으로 하여금 삼학에 있어서 적당한 방법을 얻게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매년 동선(冬禪) 해재 때에 교무부에 보고하여 교단에서 단원을 활용하는 자료를 얻기 위함이고, 셋째는 공부의 전후로 또한 공부 이후의 매년 달라진 기질 변화의 정도를 알기 위함이다. 이어서 '등급을 정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52] 이에 따르면 당연사와 부당사의 등급과 점수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13> 신분 검사의 각항 등급 및 점수 체계

당연사 및 부당사의 등급	점수
갑(甲)	4점
을(乙)	3점
병(丙)	2점
정(丁)	1점
무(戊)	무등(無等)[0점]
불(不)	신분상의 해(害)와 이(利)

즉, 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그에 맞게 점수를 계산하는 것인데, 부당 등급과 당연 등급의 점수를 총계하여 신분의 고하(高下)를 정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부당 등급으로 총 34항목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당 등급은 『규정』에 명시된 각 부의 10계문을 합한 30계문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한 것에다가 기타로 '①쟁힐·②허위·③편심·④아상'의 4항목을 더하여 총 34항목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당연 등급은 총 22항목으로 되어 있다.[53] 이러한 신분 검사는 단원의 매월 성적 조사법과는 그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단장이 조사하는 단원의 매월 성적은 크게 '①공부 성적·②사업 성적·③부채·④의견 제출'이라는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신분검사의 의의는 스스로 자기 점검이라는 측면과 교단의 용인(用人)을 위한 자료라는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살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신분 검사를 누가 실행하였는가 하는 주체(主體)의 문제이다. 신분 검사의 양식 마지막 부분에는 '보고인'과 '검사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는 내용적으로 1차적으로는 스스로 작성하고 이를 검사 및 확인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총부 임원 가운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분검사원'이 따로 내정되어 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규』「세칙」 제9조의 문장을 살펴보면 '단장은 … 매년 연말이면 단원의 신분을 검사하여 교무부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문장 상으로 단원의 신분 검사의 주체가 단장으로 해석할 수

52) 『단규』, 「세칙」, 신분보고표.

53) ①유래지위(由來地位), ②발원(發願), ③신식(新識), ④구식(舊識), ⑤선문(鮮文), ⑥한문(漢文), ⑦산술(算術), ⑧어법(語法), ⑨농업(農業), ⑩상업(商業), ⑪공업(工業), ⑫신성(信誠), ⑬수시변역(隨時變易), ⑭심사결단(心事決斷), ⑮보화(普化), ⑯공심(公心), ⑰은악(隱惡), ⑱양선(揚善), ⑲성리(性理), ⑳전일(專一), ㉑신체건강(身體健康), ㉒사실(事實)(위의 글).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그 조항 자체가 '제2절 단장으로서 단원의 일기 성적을 매월 조사하는 법'이라는 단락에 속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신분검사는 단장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분검사는 온전히 단원이 단독으로 조사하여 기록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 신분검사의 주요 용처(用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단적 용인(用人)에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용인을 위한 자료로서 개인이 작성한 것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신분 검사는 동선 해제 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에 참석하지 못한 단원 또한 작성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신분 검사는 정기 훈련 가운데 동선과 관련이 깊다. 원기 17년(1932)에 발행된 《월말통신》에서 계문 외에 심중(心中)의 소소한 경계의 조건을 7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54] 그러한 7가지의 병증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육명부 상에서 승급을 지체하도록 하거나 혹은 강급까지 시키겠다고 하는 대종사의 엄중한 경고와 경계(警戒)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가 필요하나, 『규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육명부 상의 신분 위치가 승급뿐만 아니라 강급의 길도 열려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단규』「세칙」에 나타나 있는 신분검사와 관련된 이상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4> 교단 초기 신분 검사 관련 내용

시기	내용	세부 내역
원기 12년(1927) 2월	대종사 공부인 신분 검사법 발표	①자신의 기질(氣質) 변화와 사죄취복(捨罪取福)의 길 스스로 촉진, ②교단의 인재(人材) 선택에 필요한 방법 얻음. 동선 해제시 입선인 및 간부 요인, 연 1회 실시.
원기 12년(1927) 3월	『규약』 발행	「세칙」: ①'임원 선거 규약'-육명부 관련, ②'상벌 규약'-승급 및 강급, ③'임원 명의 순서'-신분검사원
원기 14년(1929) 8월	《월말통신》 제18호	입선인 및 임원, 신분검사법 연 2회 실시
원기 16년(1931) 7월	『단규』 발행	「세칙」, 신분검사법: 최초 신분 검사법 내용과 동일, 동선 해제시 연 1회 실시.
원기 17년(1932) 4월	《월말통신》 제35호	대종사 법설, 소소한 7종의 심병(心病) 다수 발생시, 승급 지체 및 강급 경고.

이를 다시 살펴보면, 원기 12년(1927) 2월에 대종사께서 신분 검사법을 발표하였고, 그 다음 달인 3월에 『규약』이 발행되었는데, 『규약』의 「세칙」에서는 임원이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부는 승급뿐만 아니라 강급 및 제명도 될 수 있음을

54) "우(右)와 같어니 남녀 어느 편을 물론하고 사건이 많이 발생하난 것을 보와 육명부(六名簿) 승급시 지체(遲滯)를 식히며 혹 강급(降級)을 식히리라 하시드라."(《월말통신》 제35호, 법설: 공부인의 대병처(大病處), 원기17년·1932, 4월). 이 내용은 『대종경』, 제13 교단품 20장에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기에서와 같은 승급·강급의 얘기는 없고, 다만 크게 주의하라고만 되어 있다.

명시하고 있으며, 임원 가운데에는 신분검사원이 임명되도록 나타난다. 그런데 원기 14년(1929) 8월에 발행된《월말통신》에서는 비록 신분검사법을 연 2회 실시한다는 기록도 보이기는 하나, 원기 16년(1931) 7월에 발행된『단규』의「세칙」에서는 처음의 신분검사법과 같이 동선 해제시에 연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원기 17년(1932) 4월에 발행된《월말통신》에서는 소소한 심병(心病)이 다수 발생한 자로 하여금 승급이 지체되거나 강급도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원기 12년(1927)에 신분검사법이 발표된 이후에 그 내용이 명문화되면서 착실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조사 시기가 대체로는 동선 해제시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분검사는 임원과 육명부로 구성된 학위 등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학위등급

학위등급(學位等級)은 학력고시법(學力考試法)과 관련이 있는데, 학력고시법에 대하여서는 장진수(진영) 교무가 상세하게 연구한 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원기 10년(1925)에 훈련법이 제정된 해에 '학력고시법'은 현 '법위등급'의 내용에 해당하는 '학위등급법'도 함께 제정되었으며, 원기 17년(1932)에 발행된『육대요령』에「학력고시편」으로 그 원칙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원기 19년(1934)년에 발행된《회보》제8호에는「예비학력고시법」이 게재되었으며, 이는 다시 원기 27년(1942)에 발행된『불법연구회 회규』의「행해법계」로 전승된다.[55] 이는 비록 학력고시법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나 학력고시법 내에는 학위 등급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학력고시는 학위등급으로 귀결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학위 등급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산의『창건사』에는 원기 10년(1925)에 발표된 학력고시법과 학위등급법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기 10년(1925) 8월에 대종사께서는 학력고시법을 정하여 수양·연구·취사의 3과목에 대하여 고시(考試)한 실력에 따라 공부인을 각 과목 내에 '①갑(甲)·②을 (乙)·③병(丙)·④정(丁)·⑤무(戊)'라는 등별(等別)로 구분하여 5개반에 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위등급법을 제정하여 '①보통부(普通簿)·②특신부·③법마상전부·④법강항마부·⑤출가부·⑥대각여래부'라는 6급(級)의 6부(簿)와 그 사이에 각 예비부를 두게 하였고, 매 3년마다 3강령[삼학]을 표준으로 조사하여 그에 맞게 배정하도록 하였다.[56] 이 가운데 학력고시법의 구성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5) 장진영,「원불교 학력고시법(學力考試法) 고찰」,『한국종교』제47집,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2020, p.45.
56)《회보》제47호,「불법연구회창건사」, 제19장 학력고시와 학위등급법의 제정. 원기23·1938, 9.

<표15> 학력고시법의 구성

과목	수양	연구	취사
분반(分班)	갑반(甲班)	갑반	갑반
	을반(乙班)	을반	을반
	병반(丙班)	병반	병반
	정반(丁班)	정반	정반
	무반(戊班)	무반	무반

이와 같이 원기 10년(1925)에 학위등급이 6부(簿)의 체제로 제정되었다. 원기 12년(1927)에 발행된 『규약』에서도 이러한 '6부'라는 체제의 골격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먼저, 연구인의 공부순서에 '보통부(普通簿)·특신부(特信簿)·법마상전부(法魔相戰簿)'의 각 10계문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규약』「세칙」의 '6.상벌규약(賞罰規約)'에서는 보통부와 아울러 법강항마부(法强降魔簿)가 나타나고, 이를 통칭하여 '이상명부(以上名簿)' 또는 '각명부(各名簿)'라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7] 즉, 기존의 '6부' 가운데 단순히 '부'라는 명칭을 넘어서 '명부(名簿)'라고도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시기에 이미 '승급[賞]'과 '강급·할명[罰]'이라는 양방향 이동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법강항마부 등록자만이 회무소·연구소의 중임(重任)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하여, 명부 등급이 곧 조직 내 직위 임용의 실질적 기준으로 쓰였음을 『규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58] 이상의 내용에서 본다면, 『규약』에서는 '6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그 내역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맥락에서 각 부(簿)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6부' 체제로 이루어진 승급은 원기 13년(1928)에 제1대 제1회 기념총회를 계기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3월 28일에 대종사께서 직접 공부인들의 등급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교단 처음으로 승급자 68인에 대한 승급 예식을 거행하였으며, 정식법강항마부에 사후(死後) 승급으로 박세철·서동풍 등 2인, 정식특신부에 송벽조 등 6인, 예비특신부에 이춘풍 등 60인이 승급되었다.[59] 불법연구회의 첫 사업보고서인 「시창 13년도 사업보고서」(원기14· 1929.3)에서는 '교무부 제1회 공부인 훈련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①정기훈련 실시표(제7회 선 하기 입선인 지방별 급 성적, 제8회 선 동기 입선인 지방별 급 성적), ②일기법 실시 지방별 인원별, ③유념무념대조법 실시인 급 지방별, ④법설기재상황, ⑤각 조단 조직의 상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60] 즉, 그 전해부터 실시한 하선(제1학기)과 동선(제2학기)의 입선인 성적이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월말통신》 제18호(원기14·1929)에서는 입선인의 성적을 '연습성적'과 '현실성적'의

57) 『규약』, 「본회의 세칙」, 원기12년(1927) 3월.

58) "10.회무소(會務所)나 연구소나 임원이 대소(大小)가 잇스니 중임(重任)은 법강항마부(法强降魔簿)에 등록한 연구인에서 선정하고 보통임원(普通任員)은 특신부(特信簿) 이상(以上)과 유공안(有巧案)과 시봉안(侍奉案)과 혜시안(惠施案)과 저축안(貯蓄案)에 등록한 사람으로 자격을 택취(擇取)하야 선정하기로 홈"(『규약』, 「본회의 세칙」, 4.임원선거규약)

59) 《회보》 제49호, 「불법연구회창건사」, 제27장 제1회 기념총회; 『교사』, 제2편, 제2장, 4.

60) 장진영, 앞의 글, p.55.

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원기 14년(1929) 8월 6일은 제9회 하선 해제일로서, 제9회 선기부터는 입선인들의 성적을 2종의 성적으로 구분하기로 하고, 이에 검사위원들이 직접 판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61]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연습성적'은 다시 갑반(甲班)과 을반(乙班)의 2반 체계로 구분되었으며, 노쇠하거나 시력이 나쁜 이는 정기일기 대신 염불로 대행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현실성적'은 당연등급 (22조)과 부당등급(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곧 신분검사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연습성적을 갑반·을반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입선인들을 각 6명씩 등수로 밝히고, 또한 현실성적을 당연등급과 부당등급으로 구분하여 총 11인의 성적을 등수로 낱낱이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기 14년(1929) 제9회 하선 해제시부터 현실성적을 실제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이 바로 신분 검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같은《월말통신》제18호에서 신분검사를 연 2회 실시하였다고 하는 기록과 일치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이 원기 14년(1929) 8월의 제9회 하선 해제시부터 입선인의 성적을 '①연습성적·②현실성적'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을 도표로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6> 선기(禪期) 입선인 성적 구분

성적 종류	성격	구별 내용
연습성적	매일 6과정 훈련에 대한 등급 판정	2반 체제. ①갑반: 좌선·염불·경전·강연·회화·일기의 6과정 전부 훈련 받음. ②을반: 6과정 내 일기만 염불로 대행
현실성적	육근 작용에 대한 교무부 검사위원 판정	2등급으로 신분 검사: ①당연등급 22조 + ②부당등급 33조

이러한 내용을 보면 신분 검사는 입선인의 현실 성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학위의 '6부' 체제는 원기 14년(1929)경에 발행된《월말통신》제12호에서는 '육명부'[62]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산 종사가 공부(工夫) 방면의 등급으로 '육명부'가 있고 사업(事業) 방면에는 '십안록(十案錄)'이 있으나 그 외 특지가(特志家)도 정밀하게 조사하여 그 특선(特善)을 포창(褒彰)한다면 권선(勸善)의 일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안하는 데에서 나타난 것이다.[63]

《월말통신》제28·29호(원기15·1930)[합본]에는 비로소 「육명부 승급법(六名簿昇級法)」 전문이 실려 있으며, 이 기사에서는 6단계의 정식 명칭과 승급 조건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64]

61)《월말통신》제18호, 사업지계, 본관급각지 회합-익산본관 3예회약록, 원기14년·1929, 8월.

62) 학위를 6등급으로 나누어 따로 '명부(名簿)' 혹은 '장부(帳簿)'를 만들었다고 해서 '6명부'라는 명칭으로 불렸다.(박용덕,『소태산 박중빈 불법연구회』권2, 도서출판 여시아문, 2021, p.182)

63) "본회의 공부계로난 육명부가 잇고 사업계로난 십안록이 잇어 모든 회원의 공부 정도와 공지유무(功之有無)를 따라 등급을 정하여 주난 방법이 잇사오나…"(《월말통신》제12호, 익산지편, 사업지계, 3예회록, 원기14년·1929, 2월)

여기에서도 각 단계는 '예비부'라는 중간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단번에 승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정식의 2단 절차를 거치는 구조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승급법의 내역은 이미 현행 『정전』의 법위 등급의 내역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원기 15년(1930)에는 9월에는 대종사께서 '삼강령 훈련등급'을 제정하였는데,[65] 이러한 등급에 따라 원기 16년(1931) 2월 6일 제11회 동선 해제식에서 삼강령에 각각 '교과서 해석', '과정 성의', '학과 실행'에 해당하는 해석·성의·실행이라는 명목으로 점수와 등호에 따라 그 성적을 고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창 15년도 사업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66] 원기 16년(1931) 3월 26일에는, 대종사에 의해 제2차 법위 승급자 발표가 있었는데, 예비법마상전부에 송도성·김기천·전음광·송규·이동진화·이공주·송벽조 등 7인이었고, 총지부를 망라하여 정식 특신부가 문정규 등 54인, 예비특신부가 양하운 등 48인이었다.[67] 이러한 승급 내용은 「시창 15년도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데,[68] 그러므로 이러한 학위 승급은 삼강령의 실력을 판정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원기 16년(1931) 7월에 발행된 『단규』의 「원칙」 제12장 상벌, 제49조에서도 '육명부'라는 명칭이 조문에 나타난다.[69] 이러한 내용을 보면 교단 초기에는 법위의 승급이 상벌(賞罰)의 개념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칙」의 '단원 매월 매일 성적 조사표'에서는 기재자의 '육명부 등별'을 적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 양식에는 ①보통부·②특신부·③법마상전부의 각 10계문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단규』에서는 《월말통신》 제28·29호(원기15·1930)에서 정식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육명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단규』 발행 이후인 원기 17년(1932) 4월에는 대종사께서 친찬한 『보경 육대요령(寶經六大要領)』이 국·한문판으로 발행되었으며, 이는 대체로 '①인생의 요도·②공부의 요도·③훈련편·④학력고시편·⑤학위등급편·⑥사업고시편'의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삼강령 훈련등급을 통하여 훈련 평가에 적용되었던 학력고시법은 『육대요령』의 「학력고시편」을 통하여 정식으로 교서에 나타나게 된다.[70] 그리고 이 내용 바로 앞에는 「학력고시도」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는 「학위등급도」가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구과 일기부의 제5과에서 『단규』의 「원칙」과 「세칙」의 의지를 해석하고 단장 조사 방식에 능한 자라고 하였으며, 기타 제

64) 《월말통신》 제28·29호, 공부지계, 답안: 나의 본 본회의 요법, 가.교법상으로 본 요법, 원기 15년(1930) 6월.

65) "종사주(宗師主)께옵서 9월경에 제정하신 삼강령 훈련등급조례로써 학력(学力)을 고시하옵신바 김기천 송규 송도성 전음광 4인이 연구과목 일기반(日記部) 갑반(甲班)과 연구과 정기전문부 을반(乙班)에 입격(入格)되엿으므로 수업증(受業証)을 하부(下附)하시다."(「시창15년도 사업보고서」, 교무부 제3회 상황보고서, 1.상황보고)

66) 장진영, 「원불교 학력고시법(學力考試法) 고찰」, 『한국종교』 제47집,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2020, pp.57-58.

67) 『교사』, 제2편 회상의 창립, 제3장 교단체제의 형성, 3.각 조단의 정비와 새 회규의 시행.

68) 「시창15년도 사업보고서」, 교무부 제3회 상황보고서, 4.6명부승급기(名簿昇級記).

69) "제49조: 교무부에서는 각 단장과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조사하야 특별한 성적이 유한 시(時)는 육명부 승급조항(六名簿昇級條項)을 대조하야 적당한 대로 승급(昇級)식히난 동시에 각 방면에 포창(褒彰)함"(『단규』, 제49조)

70) 장진영, 앞의 글, p.58.

1-4과의 내용도 상시일기법에 능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삼강령 훈련등급에서의 교과서 해석 조항을 기준으로 하여 계승한 것이며, 별도로 일기부를 둔 것은 실제 상시훈련의 점검을 위해 제정된 상시 일기법, 즉 '단원매일일기조사법'과 '단장매월일기조사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71] 이와 같이 학력고시의 연구분과에는 상시 일기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원기 17년(1932) 8월에 발행된《월보》제39호에서는 선원생들의 각과 공부성적에 대하여 '①학과 실행·②교과서 음강(音講)·③과정성의(課程誠意)·④과정일기반(課程日記班)'으로 구분하여 성적등급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과정일기반'이란 과가 나타난다.[72]

원기 19년(1934)에 발행된《회보》제8호에는 「예비학력고시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학력고시의 원칙은『육대요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보다 정확한 실력을 조사하기 위하여『육대요령』의 원칙을 보완한 것이 바로 「예비학력고시법」임을 밝히고 있다.[73] 그리고 그 고시법의 마지막 조항인 제18조에서는 삼강령의 고시는 입선자에 한하여 행한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74] 이러한 학력고시법의 내용은 원기 27년(1942) 4월 26일에 채택 시행된 불법연구회 시대 최후의 회규인『불법연구회 회규』에 '행해법계(行解法階)'란 내용으로 전승된다. 여기에서 '행(行)'이란 계율(戒律)과 선정(禪定)을 의미하고, '해(解)'란 지혜(智慧)를 말한다. 내용적으로는 취사와 수양이 '행'에, 그리고 연구는 '해'에 해당하는데,[75] 이는 일제의 압제라는 시대 상황에 따라 불교식으로 재해석 혹은 재배치 한 것으로 추정된다.[76] '행해법계'는 학력고시와 학위등급을 연계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학력고시의 결과가 학위등급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위 등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시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7> 초기 교단의 학위 등급 관련 사항

시기	주요 사항	내용
원기 10년(1925) 8월	대종사, 학력고시법 및 학위 등급 발표	학력고시법, 수양 연구 취사의 각 5반; 학위등급법, 6부
원기 14년(1929) 8월	당년 제9회 하선부터 입선인의 성적을 '연습성적'과 '현실성적'의 2종으로 구분	①연습성적: 갑반(甲班)·을반(乙班) 2반 체계. ②현실성적: 당연등급(22조)·부당등급(33조) [신분 검사 내용]
원기 15년(1930)	대종사 '삼강령 훈련등급' 제정	

71) 위의 글, p.60. 참조.
72)《월보》제39호, 제14회 임신 하선원 각과 공부성적 발표, 원기 17년(1932) 8월.
73) "본 학력고시는 육대요령내 그 원칙(原則)이 있으나 그보다 더 정확한 실력을 조사하기 위하야 금번에 갱(更)히 본 예비학력고시법을 제정하심."(《회보》제8호, 원기19년·1934, 5월)
74) "제18조 본 연구 수양 취사의 3과의 고시(考試)는 입선자(入禪者)에 한하야 행하며 본 삼과 전부의 허가(許可)를 득(得)한 자는 법강항마부에 승급함을 득함."(《회보》제8호, 「예비 학력고시법」, 원기19년·1934, 5월)
75) "제172조 공부인의 계율 선정을 행(行)이라 하고 지혜를 해(解)라 함."(『불법연구회 회규』, 제5장 행해법계(行解法階), 원기27년·1942, 4월)
76) 장진영, 앞의 글, p.66. 참조.

원기 16년(1931) 2월	제11회 동선 해제식에서 삼강령 훈련 등급에 따라 성적 고시	
원기 17년(1932) 4월	『육대요령』,「학력고시편」	연구과 일기부, 연구과 정기전문부, 수양과, 취사과, 각과 반별
원기 19년(1934) 5월	《회보》 제8호, 예비학력고시법 발표	삼강령에 따른 3과(科)의 고시(考試)는 입선자에 한하여 행함.
원기 27년(1942) 4월	『불법연구회 회규』,「행해법계」	학력고시의 결과가 학위등급임을 밝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신분검사는 정기 훈련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상시 일기는 『육대요령』의 「학력고시편」에 따르면 연구과에 일기부가 있는 것과 취사는 다시 30계문의 실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학력고시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단규』 「세칙」을 중심으로 하는 상시 일기는 정기 훈련과 연계하여 신분검사와 함께 그 관련성을 비추어 보아야 그 명확한 위치와 의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종사께서 원기 10년(1925)에 훈련법과 함께 학력고시와 학위등급을 발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 훈련법은 크게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으로 구성되고, 그러한 훈련의 결과가 학력고시를 통한 학위 등급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나가며

원불교 초기 교단의 상시 일기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상시 일기는 상시 훈련, 정기 훈련, 학력 고시, 학위 등급 등과 긴밀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규』 「세칙」에 밝혀진 매일 일기 성적 조사법을 중심으로 한 상시 일기법의 의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 상시 일기의 정신적 원형은 『성계명시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계명시독』의 일기 기재는 단장을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9인이 우주(宇宙) 시방(十方)에 응하여 각자의 방위에서 진리를 속이지 않는 사실적인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단회(團會)인 3·6예회에서 단장이 조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2] 후천(後天) 개벽(開闢)의 원년(元年)인 원기 9년(1924)에 전북 익산에서 불법연구회 총회를 개최하고 총부를 건설하기 시작한 바로 다음 해인 원기 10년(1925)년에 먼저 훈련법을 제정하고 바로 이어서 학력고시법과 학위등급법을 발표하면서 상시 훈련과 정기 훈련(하선·동선)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기 10년(1925)은 원불교 훈련법과 평가의 실제적인 원년(元年)이라고 할 수 있다.

[3] 실제로 초기 교단에서 훈련을 실시한 내용을 보면 3개월 동안 상시 훈련을 하고, 다시

3개월 동안 하선, 3개월 상시훈련, 3개월 동선이라는 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시 훈련과 정기 훈련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연 '물샐틈 없는' 공부법이라 할 수 있다.

[4] 상시 훈련은 정기 훈련으로 이어지고, 정기 훈련은 다시 상시 훈련을 통하여 점검되므로, 상시 일기법도 정기 훈련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때, 더욱 그 의의가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 훈련법의 제정과 그에 대한 평가 제도는 대종사께서 영산에서 처음 회상을 건설하시고 변산에서 삼강령·팔조목·사은·사요의 기본 교리를 제정한 다음, 그 교리를 실제로 수행하도록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학력 고시를 통하여 학위 등급으로 귀결되므로, 전체적인 시간적 구성을 보면 현 『정전』이 '①총서편-②교의편-③수행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면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6] 상시 일기의 의의 가운데 하나는 매일 단원들의 성적을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데에도 있다. 매일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계문 대조를 하고, 수지 대조를 하도록 하여, 공부와 사업의 양면에 있어서 『단규』의 표어인 '일일신(日日新) 우일신(又日新)'을 실천하도록 하여 단원들의 혜(慧)·복(福)을 병진(竝進)하게 한 것이다.

[7] 상시 일기의 또 다른 의의는 문자(文字)와 서식(書式)을 통한 계산(計算)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인용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이 주관적인 막연한 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도록 이끌로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여타 종교의 수행법에서는 흔히 찾을 수 없는 매우 정밀하고 물샐 듬 없는 공부법이라 할 수 있다.

[8] 『단규』의 구성을 보았을 때, 「원칙」에서는 조단(組團)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내역을, 「세칙」에서는 주로 상시 일기 기재와 점검 및 보고에 대한 내역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단 활동의 중심에는 단원들의 상시 일기 기재와 점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상시 일기는 학위 등급과 연관되고, 신분 검사는 동선·하선의 정기 훈련과 연관되고, 정기 훈련에서는 입선인의 학력을 고시하여 학위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그 공통된 내용은 삼학으로 집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일기는 공부와 사업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0] 평가의 중심에는 삼학이 근간이 된다는 점은 학위 등급과 후의 법위 등급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학위와 법위의 내용이 대체로 삼학의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신분검사의 내용은 단원들, 혹은 정기훈련 입선인(入禪人)의 실력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교단의 용인(用人)에 활용되도록 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 상시 일기에 있어서 의견 제출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간이 일기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러므로 단 활동에 있어서 의견 제출은 교단 발전에

기여하는 한 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3] 『단규』의 내용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단규』「세칙」에 밝혀진 상시 일기법 가운데 '정식 일기'의 내용을 상시 일기법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유무념'과 '태조사' 법도 시설되어 있고, 후에 4종 일기로 분화되기도 하나, 이는 다만 대중의 편의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대체로 노혼(老昏)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교육 평등이 실현되어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않은 경우는 희소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4종 일기 가운데 '정식(正式) 일기'를 '원(原)일기'라고 칭한 부분과도 일치하는데, 물론 대중의 근기를 따라서 활용하도록 하는 양방향을 고려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14] 상시 일기 기재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하여 단원들의 일기 기재에 대한 권면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재 방법에 대한 교육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할 때 향후 행하여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① 현 단 활동에서 상시 일기 기재와 그 점검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단장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단장은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증진시키고, 신앙 수행에 대한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는 책임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분검사의 시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신분검사는 스스로 행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단장을 통하여서도 보다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아울러 교단 인재 선발의 기본 자료가 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기훈련에 대한 점검이다. 교단 초창기에서는 실제로 상시 훈련과 정기 훈련이 맞물려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촉진시켰는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정기훈련이 약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⑤ 법위 승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단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부인의 실력을 점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승급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원불교 수행법 가운데 상시 일기만 중요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종사께서는 당시 야학(夜學)을 중지시키면서까지 상시 일기 기재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재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단 활동에 있어서 상시 일기의 기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하도록 하고, 형식적인 기재를 넘어서서 사실적인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교단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교서

『대산종사법어』, 익산: 원불교출판사.

『대종경 선외록』, 익산: 원불교출판사.

『불법연구회 규약(規約)』, 원기 12년(1927).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統治組團規約)』, 원기 16년(1931).

『불법연구회 회규』, 원기 27년(1942).

『원불교 교사』, 익산: 원불교출판사.

『정전』, 익산: 원불교출판사.

2.저서

박용덕, 『소태산 박중빈 불법연구회』 권2, 도서출판 여시아문, 2021

3.논문

장진영, 「원불교 학력고시법(學力考試法) 고찰」, 『한국종교』 제47집,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2020.

4.원불교 소식지 및 기타

「시창15년도 사업보고서」

《월말통신》·《월보》·《회보》

5.사전

『종교학대사전』(네이버 인터넷판)

『원불교대사전』

발표 1

초기 교화단 상시 일기의 의의

-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세칙」을 중심으로

원불교 정책연구소

단(團)의 역할과 조직적 특성의 원형 탐구

—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원칙」을 중심으로 —

이주연 교무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단의 역할과 의미
Ⅲ. 단 조직의 특징
Ⅳ. 나가며
참고문헌